

인천지방법원 2018. 5. 15 선고 2018가단226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주식회사 동하건설

변론 종결 2018. 4. 24

판결 선고 2018. 5. 15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1995. 9. 7. 접수 제1179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1)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소장 중 청구원인 부분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 제3호)

판사 배구민

별지

1)원고가 소장 중 청구취지 항 하단 부분에 '피고의 소재 미확인 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'라고 기재하 였고,이 사건에서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였으므로,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.